

1. 防災關聯法規 改正

가. 建築法의 改正

法律 제 3558 號로 改正된 建築法이 1982 年 4 月 3 日 公布되어 防災研究部에서는 改正 法律의 사본을 본지부에 送付한바 있으며 그 중 安全點檢 實務와 밀접한 關聯이 있는 부분을 翻譯하여 轉載한다. 특히 建築法 제 2 조 제 3 호의 「特殊建築物」의 用語에 대한 定義가 삭제되었으나 同法 施行令에서 「特殊建築物」이란 用語가 併변히 引用되고 있으므로 建築法 施行令의 改正, 公布時 까지 點檢과 關聯하여 特殊建築物이란 用語를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을듯 하다.

改正建築法 新・舊 對比表

조 항	舊	新
제 2 조 제 7 호	“主要構造部”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重要部分을 이루는 벽, 기둥, 바닥, 들 보, 지붕, 主階段, 共他 이와 類似한 것 을 말한다.	“主要構造部”라 함은 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 및 主階段을 말한다. 다만 間壁, 셋기둥, 최하층바닥, 작은보, 遮陽, 屋外 階段,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建築物 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 외한다.
제 23 조 의 2	(特殊建築物等의 内裝) 제 2 조 제 3 호 의 규정에 의한 特殊建築物(火葬場, 屠 殺場, 塵埃 및 汚物處理場은 제외한다) 및 5 층 이상인 건축물의 屋內 部分의 内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	(建築物의 内裝) 5 층이상인 建築物, 醫療施設, 宿泊施設, 販賣施設, 觀覽集 會施設, 慶典施設, 共同住宅등 大統領 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内裝 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防 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나. 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(내무부 고시 제 4 호)

現 消防法 施行令 제 26 조의 規程에 의하여 國家檢定을 받아야 할 消防用機械器具중 泡沫消火器
와 消火藥劑를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는 除外하게 되어 있으나 할로겐화물에 의한 消火藥劑의 開
發이 눈부시게 進步하고 있으며 그 消火性能이 타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할로겐화물을 藥劑
로 한 消火器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豫想된다.

이에 内務部에서는 할로겐화물을 藥劑로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에 대한 製造 및 性能에 대한 最
小限의 基準을 製定한 것으로思料된다.

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은 全文 6 條(既送付한 規程사본 참조)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조에서 「간